|  |  |  |
| --- | --- | --- |
| **최고인민법원의 집행담보 문제에 관한 규정**  2018년 2월 23일 발표  집행담보를 진일보 규율하고 당사자•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 실천과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이 규정에서 집행담보라 함은 담보인이 민사소송법 제231조의 규정에 따라 피집행인의 효력발생 법률문서에 의해 확정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민법원에 제공하는 담보를 지칭한다.  제2조 집행담보는 피집행인이 재산담보를 제공하거나 타인이 재산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3조 피집행인 또는 타인이 집행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담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보서 부본을 집행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 담보서에는 담보인의 기본정보, 집행유예기간, 담보기간, 피담보 채권의 유형과 액수, 담보범위, 담보방식,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피집행인이 의무 불이행 시 자각적으로 직접적인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담보인의 승낙 등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재산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서에는 담보재산의 명칭, 수량, 품질, 상태, 소재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귀속 등 내용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한다.  제5조 회사가 피집행인을 위하여 집행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법 제16조에 규정에 부합되는 회사정관, 이사회 또는 주주회의•주주대회 결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피집행인 또는 타인의 집행담보에 동의하는 집행신청인은 서면동의서를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신청인이 동의한 내용을 집행관이 집행조서에 기록한 후 집행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을 취할 수 도 있다.  제7조 피집행인 또는 타인이 재산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물권법•담보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 등 담보물권 공시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공시 수속이 이미 이뤄진 경우 집행신청인은 법에 의거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행신청인이 인민법원에 담보재산의 압류(査封•扣押•凍結)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단, 담보서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인민법원이 집행유예 결정을 내린 경우 모든 집행조치의 실시를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 단, 담보서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담보서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집행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신청인의 신청에 의거하여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제10조 집행유예기간은 담보서상의 약정과 일치하여야 한다. 단,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피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기간에 담보인이 담보재산 도피•은닉•매각•훼손 등 행위를 행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신청인의 신청에 의거하여 집행을 재개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직접적으로 담보재산 또는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 재정(栽定)을 내릴 수 있다. 단, 담보인을 피집행인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담보재산 또는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은 담보인이 응당히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에 상당하는 재산에 한해야 한다. 피집행인이 집행하기에 편리한 현금•은행예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현금•은행예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 담보기간은 집행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담보서에 담보기간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담보기간에 관한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3조 담보기간이 만료된 후 집행신청인이 담보재산 또는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타인이 재산담보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의 신청에 의거하여 담보재산에 취해진 압류(査封•扣押•凍結)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 담보인이 담보책임을 이행한 후 피집행인을 상대로 구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여야 한다.  제15조 피집행인이 집행조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변경•해제를 신청하고 이와 더불어 효력발생 법률문서에 의행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경우 이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16조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성립된 집행담보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  | **最高人民法院关于执行担保若干问题的规定**  2018年2月23日发布  　　为了进一步规范执行担保，维护当事人、利害关系人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等法律规定，结合执行实践，制定本规定。  　　第一条 本规定所称执行担保，是指担保人依照民事诉讼法第二百三十一条规定，为担保被执行人履行生效法律文书确定的全部或者部分义务，向人民法院提供的担保。  　　第二条 执行担保可以由被执行人提供财产担保，也可以由他人提供财产担保或者保证。  　　第三条 被执行人或者他人提供执行担保的，应当向人民法院提交担保书，并将担保书副本送交申请执行人。  　　第四条 担保书中应当载明担保人的基本信息、暂缓执行期限、担保期间、被担保的债权种类及数额、担保范围、担保方式、被执行人于暂缓执行期限届满后仍不履行时担保人自愿接受直接强制执行的承诺等内容。  　　提供财产担保的，担保书中还应当载明担保财产的名称、数量、质量、状况、所在地、所有权或者使用权归属等内容。  　　第五条 公司为被执行人提供执行担保的，应当提交符合公司法第十六条规定的公司章程、董事会或者股东会、股东大会决议。  　　第六条 被执行人或者他人提供执行担保，申请执行人同意的，应当向人民法院出具书面同意意见，也可以由执行人员将其同意的内容记入笔录，并由申请执行人签名或者盖章。  　　第七条 被执行人或者他人提供财产担保，可以依照物权法、担保法规定办理登记等担保物权公示手续；已经办理公示手续的，申请执行人可以依法主张优先受偿权。  　　申请执行人申请人民法院查封、扣押、冻结担保财产的，人民法院应当准许，但担保书另有约定的除外。  　　第八条 人民法院决定暂缓执行的，可以暂缓全部执行措施的实施，但担保书另有约定的除外。  　　第九条 担保书内容与事实不符，且对申请执行人合法权益产生实质影响的，人民法院可以依申请执行人的申请恢复执行。  　　第十条 暂缓执行的期限应当与担保书约定一致，但最长不得超过一年。  　　第十一条 暂缓执行期限届满后被执行人仍不履行义务，或者暂缓执行期间担保人有转移、隐藏、变卖、毁损担保财产等行为的，人民法院可以依申请执行人的申请恢复执行，并直接裁定执行担保财产或者保证人的财产，不得将担保人变更、追加为被执行人。  　　执行担保财产或者保证人的财产，以担保人应当履行义务部分的财产为限。被执行人有便于执行的现金、银行存款的，应当优先执行该现金、银行存款。  　　第十二条 担保期间自暂缓执行期限届满之日起计算。  　　担保书中没有记载担保期间或者记载不明的，担保期间为一年。  　　第十三条 担保期间届满后，申请执行人申请执行担保财产或者保证人财产的，人民法院不予支持。他人提供财产担保的，人民法院可以依其申请解除对担保财产的查封、扣押、冻结。  　　第十四条 担保人承担担保责任后，提起诉讼向被执行人追偿的，人民法院应予受理。  　　第十五条 被执行人申请变更、解除全部或者部分执行措施，并担保履行生效法律文书确定义务的，参照适用本规定。  　　第十六条 本规定自2018年3月1日起施行。  　　本规定施行前成立的执行担保，不适用本规定。  　　本规定施行前本院公布的司法解释与本规定不一致的，以本规定为准。 |